

『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기초연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현행의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하여 기초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-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지급하는 효도수당 및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폐지와 관련 서식 삭제(안 제2조제6호, 제26조 ~ 제29조, 별지서식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「기초연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(‘14.7.1)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

하여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의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하여 기초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효도수당 및 만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수당 폐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기초연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정부는 중복 수혜 논란이 있는 효도수당, 장수수당 등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 중에서 100분의 10을 추가 차감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원활한 국비확보를 통해 기초연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「기초연금법」

제25조(비용의 부담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.

② 생략

□ 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

제23조(비용의 부담 등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.

② ~ ③ 생략

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(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)을 부담할 수 있다.